

ASF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현황('26.1.27일 기준)

- (근거) 행정명령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,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
- (조치방법) 행정명령은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(시·군·구), 공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(농식품부)
- (적용시기)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

< 행정명령 및 공고(안) >

구분	연번	주요 내용	명령대상	위반시 벌칙
행정명령	1	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·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	양돈농장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	2	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·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	양돈농장	
	3	양돈농가는 방목 사육 금지	양돈농장	
	4	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	축산차량	
	5	양돈농장의 울타리(담장)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* 외 차량 진입금지 * 가축운송, 사료운송, 분뇨·퇴비운송, 방역	양돈농장	
	6	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 의 시·도간 이동금지	축산차량	
	7	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(공동 사용) 금지	양돈농장	
	8	양돈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* 다만, 「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」에 따른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경우, 해당 농가에 대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선별적 해제 가능	양돈농장	
	9	ASF 신고기준 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,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	양돈농장	
	10	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, 발생 시·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·분뇨 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(방역지역 해제시까지) * 다만,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	양돈농장	
	11	양돈농장 종사자(외국인근로자 포함)는 ASF 오염 우려 물품(불법 수입축산물 등) 농장 내 반입·보관 금지 * ASF 발생국 축산물(육류, 가공육제품, 육포, 소시지 등)	양돈농장 농장종사자	

공고	1	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·보관	양돈농장	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
	2	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* , 얼지 않도록 점검, 고장 시 즉시 정비·보수 * 고정식 소독기 + 고압분무 소독	양돈농장	
	3	공사 시 사전신고	양돈농장	
	4	소독/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·사람 진입 통제	양돈농장	
	5	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	양돈농장	
	6	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	양돈농장	
	7	전국 양돈농장 소유자(관리자 포함)는 농장 퇴비사 및 농장 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해 환경검사 실시 (~26년 2월까지) ※ 환경검사 결과 양성 검출 시 양돈농장 내·외부에 대해 일제 소독 실시 (소독 완료 후 2일 이내 임상·정밀검사 실시)	양돈농장	
	8	전국 양돈농장 소유자(관리자 포함)는 농장종사자(외국인 근로자 포함) 정보를 시·군·구에 제출 (~26년 2월까지) * 국적, 연락처(휴대전화), 농장명(근로자 이름은 미포함), 방역 교육자료 수신 목적이며, 변경사항은 분기별 현행화 제출	양돈농장	